

제2544호
2017. 10. 2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7-94호 :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2
 - 제2017-95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
 - 제2017-96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4
 - 제2017-97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5
- **공 고**
 - 제2017-73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안 6
 - 제2017-734호 :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9
 - 제2017-735호 :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3
 - 제2017-73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4
 - 제2017-737호 : 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공람공고 53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94호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계	446,619,925	443,329,496	3,290,429	0.74%		
일 반 회 계	395,100,257	391,809,828	3,290,429	0.84%		
특 별 회 계	51,519,668	51,519,668	0	0%		
의료급여기금	248,930	248,930	0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805,166	1,805,166	0	0%		
주 차 장	49,447,266	49,447,266	0	0%		
기 반 시 설	18,306	18,306	0	0%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9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4길 14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6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4길 14	2017.10.25.	다산로2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39-7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21	2017.10.25.	필동로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필동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96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61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변경전	변경후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신당동 140-33	다산로44길 61	다산로44길 61	2017.10.25.	다산로4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신당동 140-35	다산로44길 61	다산로44길 59	2017.10.25.	다산로4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97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0 외 2건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0	2017.10.25.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2	2017.10.25.	건물철거
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4길 3	2017.10.25.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3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보고 또는 감사의 면제’ 내용을 삭제 : 제11조 제2항 수정
 - 협약으로서 보고·감사의 면제는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앴.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감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3396-5622, FAX: 3396-8763, 메일: junh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p> <p>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34호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1.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6-570호(2016.08.24.)로 공람 공고하였던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을 재작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 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구역의 지정

- 1) 정비사업의 명칭 :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1,713.9	증) 480.7	2,194.6	•정비기반시설 : 도로 (480.7㎡)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713.9	증) 480.7	2,194.6	100.0%	•정비기반시설(도로)편입에 따른 면적 증가
정비기반시설	도로		증) 480.7	증) 480.7	21.9%	-
대지 (획지)		1,713.9	-	1,713.9	78.1%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① 용도지역(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194.6	-	2,194.6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94.6	-	2,194.6	100.0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 미관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퇴계로	중심지 미관지구	서울역 ~ 광희동 로터리	76,800 (450)	3,200 (47)	양측 12m	건고시 제519호 (73.12.31)	()는 구역내

• 방화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남대문시장	-	중구 남창동 283의 수백필지	900,266 (2,194.6)	건고시 제727호 (63.12.13)	()는 구역내

다)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①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4	35 ~ 37	간선 도로	3,500	서울역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총고 제722호 (1936.12.26)	-
기정	중로	2	189	15 ~ 20	집산 도로	200	남창동64-1	남창동25-2	일반 도로		1978.12.29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41	남창동9-1	회현동1가 194-1	일반 도로		1978.12.29	-

② 철도(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남창동 46번지 일대	206	4,858.2	-	4,858.2	서고시 제181호 (83. 3. 29)	-

라)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역명	위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남창동 9-45	도로	-	증) 457.2	457.2	소유자 : 주식회사삼익악기
	남창동 44-11		-	증) 7.9	7.9	
	남창동 44-24		-	증) 4.0	4.0	
	남창동 44-25		-	증) 11.6	11.6	
합계			-	증) 480.7	480.7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	남대문구역 제7-1지구	2,194.6	획지	1,713.9	남창동 9-1번지일대	1	-	-	1	-	-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남대문구역	1,713.9	-	1,713.9	남창동 9-1번지	업무, 판매	39.90	567.02	(15층)
변경	제7-1지구	2,194.6	-	1,713.9	남창동 9-1번지	판매, 숙박	60.00 이하	955.22 이하	7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퇴계로변 3m						

나. 변경사유

- 금번 정비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미확보된 정비 기반시설(도로)을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 시장기능 확충 및 주변여건변화에 맞는 필요시설(판매, 숙박시설) 공급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다.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라.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2)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35호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1973. 9. 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된 무교다동구역에 대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정비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압니다.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사업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 구역	무교동45, 다동115, 을지로1가 31 일대	109,965.8	-	109,965.8	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 ('73.9.6)

2)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합 계				109,965.8	83,467.4	15,671.2	-	-
기정	무교 다동	1지구	무교동 96번지 일대	1,874.5	1,545.7	328.8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기정	무교 다동	2지구	무교동 77번지 일대	2,051.6	1,668.5	383.1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변경	무교 다동	1·2지구	무교동 60번지 일대	4,146.4	4,146.4	-	-	완료 (추진중)
기정	무교 다동	3지구	무교동 63-1번지일대	8,600.8	6,827.9	1,772.9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기정	무교 다동	4지구	무교동 45번지일대	4,736.1	3,804.5	931.6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변경	무교 다동	4지구	무교동 45번지일대	4,057.6	4,057.6	-	-	완료 (추진중)
기정	무교 다동	5지구	무교동 28번지일대	3,366.0	3,366.0	-	-	미시행
변경	무교 다동	5-1지구	태평로1가 31-20번지	178.2	178.2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2지구	태평로1가 31-23번지일대	548.0	548.0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3지구	태평로1가 31-19번지	212.9	212.9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4지구	무교동 28번지일대	305.5	305.5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5지구	무교동 31번지일대	167.1	167.1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6지구	무교동 33-1번지	105.5	105.5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7지구	무교동 27번지일대	180.4	180.4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8지구	무교동 32-2번지	601.3	601.3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9지구	태평로1가 31-25번지	165.3	165.3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10지구	무교동 25-1번지일대	557.6	557.6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5-11지구	무교동 24-2번지	155.4	155.4	-	-	소단위 관리지구
기정	무교 다동	6지구	무교동 1번지일대	1,226.8	1,092.7	134.1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기정	무교 다동	7지구	무교동 10번지일대	1,319.5	983.0	336.5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기정	무교 다동	8지구	무교동 12-1번지일대	1,386.0	1,386.0	-	-	미시행
변경	무교 다동	8-1지구	무교동 9-2번지	231.8	231.8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8-2지구	무교동 12-1번지	489.3	489.3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8-3지구	무교동 10-2번지	68.8	68.8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8-4지구	무교동 11번지	515.7	515.7	-	-	소단위 관리지구
기정	무교 다동	9지구	무교동 95번지	1,986.9	1,534.5	452.4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기정	무교 다동	10지구	무교동 20번지일대	2,004.0	2,004.0	-	-	존치지구
변경	무교 다동	10-1지구	무교동 19번지	1,171.8	1,171.8	-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무교 다동	10-2지구	무교동 21-1번지	126.9	126.9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0-3지구	무교동 21-3번지일대	136.8	136.8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0-4지구	무교동 20번지	598.3	598.3	-	-	소단위 관리지구
기정	무교 다동	11지구	태평로1가 29-1번지일대	1,370.0	1,370.0	-	-	존치지구
기정	무교 다동	12지구	태평로1가 25번지	7,435.7	6,728.7	707.0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기정	무교 다동	13지구	다동 39번지	4,202.3	2,846.8	1,355.5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기정	무교 다동	14지구	다동 33번지	4,459.9	2,982.0	1,477.9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기정	무교 다동	15지구	다동 169번지일대	2,241.0	2,241.0	-	-	미시행
변경	무교 다동	15-1지구	다동 172번지일대	96.1	96.1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2지구	다동 173번지일대	82.5	82.5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3지구	다동 171번지	297.5	297.5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4지구	다동 174번지일대	92.6	92.6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5지구	다동 175번지일대	158.6	158.6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6지구	다동 170-2번지일대	420.8	420.8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7지구	다동 169번지	317.4	317.4	-	-	소단위 관리지구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무교 다동	15-8지구	다동 176번지일대	92.2	92.2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9지구	다동 177-2번지일대	210.9	210.9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10 지구	다동 168번지	89.2	89.2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11 지구	다동 167번지	33.1	33.1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12 지구	다동 165-1번지일대	74.2	74.2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13 지구	다동 166번지일대	68.1	68.1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14 지구	다동 165-2번지일대	143.5	143.5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15 지구	다동 165-3번지일대	145.7	145.7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16 지구	다동 164-1번지일대	77.9	77.9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5-17 지구	다동 164-2번지일대	112.5	112.5	-	-	소단위 관리지구
가정	무교 다동	16지구	다동 130번지일대	2,374.0	2,374.0	-	-	준차지구
변경	무교 다동	16-1지구	다동 130번지일대	1,376.5	1,376.5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6-2지구	다동 60번지일대	132.3	132.3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6-3지구	다동 129번지일대	360.7	360.7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6-4지구	다동 134-1번지일대	400.0	400.0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6-5지구	다동 134-4번지일대	214.5	214.5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6-6지구	다동 134-3번지	17.9	17.9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6-7지구	다동 128번지	284.3	284.3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6-8지구	다동 137번지 일대	232.1	232.1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16-9지구	다동 138번지일대	362.2	362.2	-	-	소단위 관리지구
	가정	무교 다동	17지구	다동 155번지	4,154.9	2,796.5	1,358.4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가정	무교 다동	18지구	다동 140번지	2,319.7	1,589.1	730.6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가정	무교 다동	19지구	다동 10번지	4,371.2	2,881.2	1,490.0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가정	무교 다동	20지구	다동 70번지	3,231.3	2,186.4	1,044.9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가정	무교 다동	21지구	다동 94번지일대	1,995.4	1,396.8	598.6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시행중
가정	무교 다동	22지구	다동 97번지일대	1,057.0	1,057.0	-	-	준차지구
변경	무교 다동	22-1지구	다동 97번지일대	567.8	567.8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2-2지구	다동 98-1번지일대	353.3	353.3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2-3지구	다동 98-2번지일대	124.4	124.4	-	-	소단위 관리지구
가정	무교 다동	23지구	다동 125번지일대	1,330.0	1,330.0	-	-	미시행
변경	무교 다동	23-1지구	다동 127번지일대	60.4	60.4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2지구	다동 126번지	79.3	79.3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3지구	다동 124-2번지일대	182.9	182.9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4지구	다동 124-3번지일대	152.8	152.8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5지구	다동 125번지일대	301.2	301.2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6지구	다동 123-2번지	95.9	95.9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7지구	다동 123-1번지일대	106.3	106.3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무교 다동	23-8지구	다동 121-2번지일대	188.1	188.1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9지구	다동 123-7번지일대	103.5	103.5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10지구	다동 123-6번지일대	150.6	150.6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11지구	다동 121-4번지	125.6	125.6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3-12지구	다동 122-1번지일대	282.2	282.2	-	-	소단위 관리지구
가정	무교 다동	24지구	다동 124번지일대	1,353.0	1,353.0	-	-	미시행
변경	무교 다동	24-1지구	다동 121-3번지	158.7	158.7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4-2지구	다동 120번지	275.4	275.4	-	-	소단위 관리지구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무교 다동	24-3지구	다동 117번지일대	426.4	426.4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4-4지구	다동 115번지일대	391.0	391.0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4-5지구	다동 116번지일대	66.7	66.7	-	-	소단위 관리지구
	무교 다동	24-6지구	다동 114번지일대	116.1	116.1	-	-	소단위 관리지구
가정	무교 다동	25지구	다동 85번지	3,233.2	2,114.7	1,118.5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가정	무교 다동	26지구	다동 88번지	2,167.7	1,473.8	693.9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가정	무교 다동	27지구	다동 103번지	1,881.0	1,280.8	600.2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가정	무교 다동	28지구	다동 111번지	1,715.0	1,138.6	576.4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가정	무교 다동	29지구	을지로1가 16번지	2,439.3	2,103.6	335.7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가정	무교 다동	30지구	을지로1가 32번지일대	595.0	595.0	-	-	미시행
변경	무교 다동	30지구	을지로1가 32번지일대	603.1	603.1	-	-	소단위 관리지구
가정	무교 다동	31지구	을지로1가 42번지	2,038.7	1,936.5	102.2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가정	무교 다동	32지구	을지로1가 50번지일대	1,415.0	1,415.0	-	-	준차지구
변경	무교 다동	32지구	을지로1가 50번지일대	1,143.3	1,143.3	-	-	준차지구
가정	무교 다동	33지구	을지로1가 63번지일대	2,016.0	2,016.0	-	-	보존지구 (보전장비형)
가정	무교 다동	34지구	을지로1가 87번지일대	5,628.1	5,169.9	458.2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가정	무교 다동	35지구	을지로1가 101-1번지일대	3,846.1	3,518.8	327.3	건설부고시 제46호(76.4.7)	완료 (시행중)
신설	무교 다동	36-1지구	다동 141번지일대	114.1	114.1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무교 다동	36-2지구	다동 142번지일대	108.9	108.9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무교 다동	36-3지구	다동 143번지일대	107.4	107.4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무교 다동	36-4지구	다동 144번지일대	101.1	101.1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무교 다동	37-1지 구	을지로1가 47-3번지	106.6	106.6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무교	37-2지	을지로1가	141.7	141.7	-	-	소단위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 면적		
	다동	구	46-2번지일대					관리지구
신설	무교 다동	37-3지 구	을지로1가 71-9번지	18.2	18.2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무교 다동	38지구	다동 103-8번지일대	132.2	132.2	-	-	소단위 관리지구
계획기반시설(기존 국공유지 포함)				10,827.2	-	-	-	-

3) 지구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1지구, 2지구	1·2지구	무교동 96번지 일 대	· 무교다동 1·2·4지구 정비계 획 변경 반영	· 무교다동 1·2·4지구 정비계 획 변경 추진 - 1, 2지구 통합 - 기결정도로 폐지	-
변경	4지구	4지구	무교동 45번지일대	· 무교다동 1·2·4지구 정비 계획 변경 반영	· 무교다동 1·2·4지구 정비계 획 변경 추진 - 기결정 주차장 폐지	-
변경	5지구	5-1지구 ~ 5-11지구	무교동 28번지일대	· 일반정비지구(장기미시행)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장기 미시행지구에 대하여 획 지형상 등 현황여건을 감안 하여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변경	8지구	8-1지구 ~ 8-4지구	무교동 9-2번지 일 대	· 일반정비지구(장기미시행)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장기 미시행지구에 대하여 획 지형상 등 현황여건을 감안 하여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변경	10지구	10-1지구 ~ 10-4지구	무교동 21-3번지 일대	· 존치지구 → 보존지구(보전정비형) (10-1지구) → 일부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10-1지구(체육회관)은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상 근현대건축자산 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존지구(보전 정비형)로 전환 · 인접소필지는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변경	15지구	15-1지구 ~ 15-17지구	다동 172번지일 대	· 일반정비지구(장기미시행)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장기 미시행지구에 대하여 획 지 형상 및 상권활성화 등 현황여건을 감안, 소단위관리 지구로 전환	-
변경	16 지 구	16-1지구 ~ 16-9지구	다동 130번지일 대	· 존치지구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기존 존치지구에 대하여 획지 형상 및 상권활성화 등 현황 여건을 감안, 소단위관리지구 로 전환	-

구분	지구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22지구	22-1지구 ~ 22-3지구	다동 97번지일대	· 존치지구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기존 존치지구에 대하여 획지 형상 및 상권활성화 등 현황 여건을 감안, 소단위관리지구 로 전환	-
변경	23지구	23-1지구 ~ 23-12지구	다동 127번지일대	· 일반정비지구(장기미시행)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장기 미시행지구에 대하여 획 지형상 등 현황여건을 감안 하여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변경	24지구	24-1지구 ~ 24-6지구	다동 116번지일대	· 일반정비지구(장기미시행)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장기 미시행지구에 대하여 획 지형상 등 현황여건을 감안 하여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변경	30지구	30지구	을지로1가 32번지일대	· 일반정비지구(장기미시행)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장기 미시행지구에 대하여 획 지형상 등 현황여건을 감안 하여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변경	32지구	37-1지구 ~ 37-3지구	을지로1가 46-2번지 일대	· 존치지구 → 일부 소단위정비지구 전환	· 기존 존치지구(삼성빌딩)내 소필지에 대하여 소단위관리 지구로 전환	-
신설	-	36-1지구 ~ 36-4지구	다동 141번지일대	· 기결정기반시설(도로)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기존 도로부지에 대하여 현황 여건을 감안하여 소단위관리 지구로 전환	-
신설	-	38지구	다동 103-8번지 일대	· 기결정 기반시설(공공공지) → 소단위정비지구 전환	· 기존 공공공지내 일부 배전스 테이션 부지로 전환	-

나. 도시환경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09,965.8	-	109,965.8	100.0	-	
정비기반 시설	소계	29,857.8	감) 2,403.2	27,454.6	24.1	-
	도로	21,883.3	감) 4,133.9	17,749.4	15.3	-
	공원	5,751.8	감) 519.3	5,232.5	4.8	-
	주차장	253.1	증) 10.0	263.1 (6,632.8)	0.2	()는 다동공원 지하주차장 1개 소
	공공공지	1,969.6	감) 745.3	1,224.3	1.1	-
	광장	-	증) 1,039.3	1,039.3	0.9	-
공공청사	-	증) 1,946.0	1,946.0	1.8	-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획 지	소계	80,108.0	증) 3,359.4	83,467.4		75.9	-
	1지구	1,545.7	감) 932.2	1·2지구	4,146.4	-	-
	2지구	1,668.5					
	3지구	6,827.9	-	3지구	6,827.9	-	-
	4지구	3,804.5	증) 253.1	4지구	4,057.6	-	-
	5지구	3,366.0	감) 3,366.0	5지구	-	-	-
	6지구	1,092.7	-	6지구	1,092.7	-	-
	7지구	983.0	-	7지구	983.0	-	-
	8지구	1,386.0	감) 1,386.0	8지구	-	-	-
	9지구	1,534.5	-	9지구	1,534.5	-	-
	10지구	2,004.0	감) 2,004.0	10지구	-	-	-
	12지구	6,728.7	-	12지구	6,728.7	-	-
	13지구	2,846.8	-	13지구	2,846.8	-	-
	14지구	2,982.0	-	14지구	2,982.0	-	-
	15지구	2,241.0	감) 2,241.0	15지구	-	-	-
	16지구	2,374.0	감) 2,374.0	16지구	-	-	-
	17지구	2,796.5	-	17지구	2,796.5	-	-
	18지구	1,589.1	-	18지구	1,589.1	-	-
	19지구	2,881.2	-	19지구	2,881.2	-	-
	20지구	2,186.4	-	20지구	2,186.4	-	-
	21지구	1,396.8	-	21지구	1,396.8	-	-
	22지구	1,057.0	감) 1,057.0	22지구	-	-	-
	23지구	1,330.0	감) 1,330.0	23지구	-	-	-
	24지구	1,353.0	감) 1,353.0	24지구	-	-	-
	25지구	2,114.7	-	25지구	2,114.7	-	-
	26지구	1,473.8	-	26지구	1,473.8	-	-
	27지구	1,280.8	-	27지구	1,280.8	-	-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28지구	1,138.6	-	28지구	1,138.6	-	-	
		29지구	2,103.6	-	29지구	2,103.6	-	-	
		30지구	595.0	감) 595.0	30지구	-	-	-	
		31지구	1,936.5	-	31지구	1,936.5	-	-	
		34지구	5,169.9	-	34지구	5,169.9	-	-	
		35지구	3,518.8	-	35지구	3,518.8	-	-	
	소단 위 관리 지구	5지구	-	-	증) 3,177.2	5-1지구	178.2	-	-
			-	-	-	5-2지구	548.0	-	-
			-	-	-	5-3지구	212.9	-	-
			-	-	-	5-4지구	305.5	-	-
			-	-	-	5-5지구	167.1	-	-
			-	-	-	5-6지구	105.5	-	-
			-	-	-	5-7지구	180.4	-	-
			-	-	-	5-8지구	601.3	-	-
			-	-	-	5-9지구	165.3	-	-
			-	-	-	5-10지구	557.6	-	-
-	-	-	5-11지구	155.4	-	-			
획 지	8지구	-	-	증) 1,305.6	8-1지구	231.8	-	-	
		-	-	-	8-2지구	489.3	-	-	
		-	-	-	8-3지구	68.8	-	-	
		-	-	-	8-4지구	515.7	-	-	
	10지구	-	-	증) 862	10-2지구	126.9	-	-	
		-	-	-	10-3지구	136.8	-	-	
		-	-	-	10-4지구	598.3	-	-	
	15지구	-	-	증) 2,512.8	15-1지구	96.1	-	-	
		-	-	-	15-2지구	82.5	-	-	
		-	-	-	15-3지구	297.5	-	-	
		-	-	-	15-4지구	92.6	-	-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15-5지구	158.6	-	-				
					15-6지구	420.8	-	-				
					15-7지구	317.4	-	-				
					15-8지구	92.2	-	-				
					15-9지구	210.9	-	-				
					15-10지구	89.2	-	-				
					15-11지구	33.1	-	-				
					15-12지구	74.2	-	-				
					15-13지구	68.1	-	-				
					15-14지구	143.5	-	-				
					15-15지구	145.7	-	-				
					15-16지구	77.9	-	-				
					15-17지구	112.5	-	-				
					16지구	-	증)	3,380.5	16-1지구	1,376.5	-	-
									16-2지구	132.3	-	-
	16-3지구	360.7	-	-								
	16-4지구	400.0	-	-								
	16-5지구	214.5	-	-								
	16-6지구	17.9	-	-								
	16-7지구	284.3	-	-								
	22지구	-	증)	1,045.5	22-1지구	567.8	-	-				
					22-2지구	353.3	-	-				
22-3지구					124.4	-	-					
23지구					-	증)	1,828.8	23-1지구	60.4	-	-	
								23-2지구	79.3	-	-	
								23-3지구	182.9	-	-	
								23-4지구	152.8	-	-	
								23-5지구	301.2	-	-	
23-6지구	95.9	-	-									
23-7지구	106.3	-	-									
23-8지구	188.1	-	-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23-9지구	103.5	-	-		
				23-10지구	150.6	-	-		
				23-11지구	125.6	-	-		
				23-12지구	282.2	-	-		
	24지구	-	증)	1,434.3	24-1지구	158.7	-	-	
					24-2지구	275.4	-	-	
					24-3지구	426.4	-	-	
					24-4지구	391.0	-	-	
					24-5지구	66.7	-	-	
					24-6지구	116.1	-	-	
					30지구	-	증)	603.1	30지구
	36지구	-	증)	431.5	36-1지구	114.1	-	-	
					36-2지구	108.9	-	-	
					36-3지구	107.4	-	-	
					36-4지구	101.1	-	-	
	37지구	-	증)	266.5	37-1지구	106.6	-	-	
					37-2지구	141.7	-	-	
					37-3지구	18.2	-	-	
	38지구	-	증)	132.2	38지구	132.2	-	-	
	보존지구(보전장비형)	10지구	-	증)	1,171.8	10-1지구	1,171.8	-	-
		33지구	2,016.0	-		33지구	2,016.0	-	-
	촌치지구	11지구	1,370.0	-		11지구	1,370.0	-	-
		32지구	1,415.0	감)	271.7	32지구	1,143.3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9,965.8	-	109,965.8	100.0	-
일반상업지역	109,965.8	-	109,965.8	100.0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 정일	비 고
기정	1-1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중구 다동 33 일대	9,448.3	793	12	-	-
기정	37-37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중구 태평로1가25 일대	6,562.1	362	12~25	-	-

■ 나)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5	방화지구	중구 태평로1가 25 일대	32,181.4	-	-
기정	1-6	방화지구	중구 을지로1가 87 일대	76,876.8	-	-

■ 다)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1	개발 진흥지구	중구 을지로1가87일대	77,037.8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1	20	집산도로	일반도로	208	무교동21-8	무교동79	-	-	
기정	중로	2	204	15	집산도로	일반도로	273	무교동13	무교동14	-	-	
변경	중로	2	-	15	집산도로	일반도로	90	무교동58-1	무교동33-1	-	-	
	소로	3	-	5.5~6	집산도로	일반도로	131	무교동50-1	무교동60-2	-	-	
	소로	3	-	6	집산도로	일반도로	38	무교동13-1	무교동13-2	-	-	
기정	중로	2	205	15	집산도로	일반도로	272	무교동22-4	다동111	-	-	
기정	중로	3	122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83	을지로1가 53	을지로1가 38-2	-	건설부고시 제288호 (1978.09.26.)	
기정	중로	3	124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60	을지로1가 98	을지로1가 95-1	-	건설부고시 제288호 (1978.09.26.)	
기정	중로	3	155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206	다동39-1	다동192-1	-	-	
변경	중로	3	155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40	다동181-1	다동192-1	-	-	
	소로	1	-	10~12	집산도로	일반도로	101	다동39-1	다동50-1	-	-	
	소로	3	-	4	집산도로	일반도로	58	다동50-1	다동181-1	-	-	
기정	중로	3	156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210	다동143	다동61-1	-	-	
변경	중로	3	156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103	다동71-1	다동88-1	-	-	
	소로	3	-	4	집산도로	일반도로	125	다동143	다동91-1	-	-	
기정	중로	3	157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39	다동153	다동154	-	-	
변경	소로	3	-	7	집산도로	일반도로	39	다동155-6	다동134-2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160	무교동45-3	태평로1가 19-2	-	-	
기정	소로	1	4	8	집산도로	일반도로	37	무교동9-1	무교동10	-	-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113	태평로1가 31-1	태평로1가 18-3	-	-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일반도로	67	다동85-3	다동10-2	-	-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일반도로	45	다동124-1	다동92	-	-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	8	집산도로	일반도로	75	다동114	다동124-1	-	-	
변경	소로	3	-	4	집산도로	일반도로	82	다동114	다동124-1	-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일반도로	70	무교동44-1	무교동31-4 2	-	-	
기정	소로	2	4	8	집산도로	일반도로	32	다동88-5	다동124-1	-	-	
기정	소로	2	5	8	집산도로	일반도로	85	다동134-2	다동181-1	-	-	
변경	소로	3	-	6	집산도로	일반도로	139	다동181-1	다동138-2	-	-	
기정	소로	3	2	6	집산도로	일반도로	51	다동127	다동124-1	-	-	
변경	소로	3	2	4	집산도로	일반도로	51	다동127	다동124-1	-	-	
기정	소로	2	5	7	특수도로	보행자도로	82	태평로1가 84-1	태평로1가 84-1	-	-	
신설	소로	3	-	4	집산도로	일반도로	39	다동103-7	다동166-1	-	-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일반도로	99	무교동80	무교동96-1	-	-	
폐지	소로	3	1	6	집산도로	일반도로	40	다동149	다동138	-	-	
폐지	소로	3	1	6~9	국지도로	일반도로	45	다동139	다동138-1	-	-	

■ 나)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204	중로2-	· 도로 연장변경 - 연장 : 273m⇒90m	· 15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를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폭원 축소 (공공청사, 공원,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변경)
	소로3-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15m⇒5.5~6m - 연장 : 273m⇒131m	
	소로3-	· 도로 폭원변경 - 폭원 : 15m⇒6m	
중로 3-155	중로3-155	· 도로 연장변경 - 연장 : 206m⇒40m	· 12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를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폭원 축소 (공공청사,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변경)
	소로1-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12m⇒10~12m - 연장 : 206m⇒101m	
	소로3-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12m⇒4m - 연장 : 206m⇒58m	
중로 3-156	중로3-156	· 도로 연장변경 - 연장 : 210m⇒103m	· 12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를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폭원 축소(가로공원,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변경)
	소로3-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12m⇒4m - 연장 : 210m⇒125m	
중로 3-157	소로3-	· 도로 폭원변경 - 폭원 : 12m⇒7m	· 12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를 현황도로를 감안하여 폭원 축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	소로3-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8m⇒4m - 연장 : 75m⇒82m	· 기존 상권을 미고려한 도로 계획 → 소단위 관리지구 전환, 현황도로 폭원 유지
소로2-5	소로3-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8m⇒6m - 연장 : 85m⇒139m	· 8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를 현황도로를 감안하여 선형변경 및 폭원 축소(주변지구의 소단위관리지구로 변경)
소로3-2	소로3-2	· 도로 폭원변경 - 폭원 : 6m⇒4m	· 6m로 기결정된 도로부지를 현황도로를 감안하여 폭원 축소(주변지구의 소단위관리지구로 변경)
-	소로3-	· 도로신설 - 폭원 : 4m - 연장 : 39m	· 기결정된 일반지구 및 도로부지의 소단위관리지구 전환에 따라 현황도로를 감안한 도로신설
소로2-2	-	· 도로폐지 - 폭원 : 8m - 연장 : 99m	· 지구통합 및 경계조정에 따라 폐지
소로3-1	-	· 도로폐지(집산도로) - 폭원 : 6m - 연장 : 40m	· 지구통합 및 경계조정에 따라 폐지
소로3-1	-	· 도로폐지(국지도로) - 폭원 : 6~9m - 연장 : 45m	· 소단위 관리지구 전환에 따라 폐지

■ 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253.1	증) 6,642.8	6,895.9	-	-
신설	⑤	주차장	다동85-4번지 일대	-	증) 263.1	263.1	-	-
신설	⑥	주차장	다동51-5번지 일대	-	증) 6,632.8	6,632.8	-	다동공원내 주차장(지하) 중복결정
폐지	④	주차장	무교동79번지 일대	253.1	감) 253.1	-	-	-

■ 라)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다동 85-4번지 일대 - 면적 : 263.1㎡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으로 변경
⑥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다동 51-5번지 일대 - 면적 : 6,632.8㎡	· 다동공원내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관광버스 주차장 포함, 지하2개층
④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위치 : 무교동 79번지 일대 - 면적 : 253.1㎡	· 무교다동1·2·4지구 정비계획 변경사항 반영으로 주차장 폐지

■ (2) 공간시설

■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 감	변경		
계					-	증) 1,039.3	1,039.3	-	
신설	①	광장	광장	무교동97-2번지	-	증) 570.2	570.2	-	
신설	②	광장	광장	무교동95번지 일대	-	증) 469.1	469.1	-	

■ 나)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 광장 신설 - 위치 : 무교동 97-2번지 - 면적 : 570.2㎡	· 현재 화단 등 조경시설 입지 → 현황여건 등 고려하여 광장으로 전환
②	광장	· 광장 신설 - 위치 : 무교동 95번지 일대 - 면적 : 469.1㎡	· 기결정 도로부지로 현재 휴게공간 이용중 → 현황여건 등 고려하여 일부 광장으로 전환

■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 감	변경		
계					5,751.8	감) 519.3	5,232.5	-	
기정	①	공원	가로공원	무교동2-2번지 일대	1,245.4	감) 1,245.4	-	-	
변경	①	공원	가로공원	무교동2-2번지 일대	-	증) 1,482.1	1,482.1	-	
기정	②	공원	문화공원	다동51-5번지 일대	3,936.2	감) 3,936.2	-	-	
변경	②	공원	문화공원	다동51-5번지 일대	-	증) 3,316.4	3,316.4	-	
신설	③	공원	가로공원	다동141번지 일대	-	증) 434.0	434.0	-	
폐지	①	공원	소공원	무교동97-2번지	570.2	감) 570.2	-	-	

■ 라)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소공원 → 가로공원 - 위치 : 무교동 2-2번지 일대 - 면적 : 1,245.4㎡ → 1,482.1㎡	· 현재 보행공간 및 일부 화단으로 이용중 → 기결정 공원 동측 도로부지 공원으로 추가조성
②	공원	· 소공원 → 문화공원 - 위치 : 다동 51-5번지 일대 - 면적 : 3,936.2㎡ → 3,316.4㎡	· 현재 일부공원, 음식점 입지 → 현황여건을 감안한 공원정형화, 일부 공공청사 계획
③	공원	· 가로공원 신설 - 위치 : 다동 141번지 일대 - 면적 : 434.0㎡	· 현재 음식점 및 공지로 이용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에 따른 자투리 공간 공원조성
①	공원	· 소공원 폐지 - 위치 : 무교동 97-2번지 - 면적 : 570.2㎡	· 시민 이용성이 낮은 화단형태로 조성된 상태 →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이용성 증대

■ 마)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969.6	감) 745.3	1,224.3	-	
기정	1	공공공지	다동103-8번지 일대	921.7	감) 921.7	-	-	
변경	1-1	공공공지	다동103-8번지 일대	-	증) 376.2	376.2	-	
변경	1-2	공공공지	다동178번지 일대	-	증) 239.4	239.4	-	
변경	1-3	공공공지	다동134-2번지 일대	-	71.9	71.9	-	
기정	2	공공공지	다동124-1번지 일대	488.0	감) 488.0	-	-	
변경	2	공공공지	다동124-1번지 일대	-	증) 122.9	122.9	-	
기정	3	공공공지	다동98-6번지 일대	168.8	감) 168.8	-	-	
변경	3	공공공지	다동98-6번지 일대	-	증) 152.0	152.0	-	
기정	5	공공공지	다동155-2번지 일대	128.3	-	128.3	-	
변경	4	공공공지	다동155-2번지 일대	128.3	-	128.3	-	
신설	5	공공공지	다동139번지 일대	-	증) 230.1	230.1	-	
폐지	4	공공공지	다동85-4번지 일대	262.8	감) 262.8	-	-	

■ 바)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공공공지	· 공공공지1 → 공공공지1-1 - 위치 : 다동 103-8번지 일대 - 면적 : 921.7㎡ → 376.2㎡	· 현재 음식점, 공지 등으로 사용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1-2	공공공지	· 공공공지1 → 공공공지1-2 - 위치 : 다동 178번지 일대 - 면적 : 921.7㎡ → 239.4㎡	
1-3	공공공지	· 공공공지1 → 공공공지1-3 - 위치 : 다동 134-2번지 일대 - 면적 : 921.7㎡ → 71.9㎡	
2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위치 : 다동 124-1번지 일대 - 면적 : 488.0㎡ → 122.9㎡	· 기결정된 공공공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3	공공공지	· 면적 변경 - 위치 : 다동 98-6번지 일대 - 면적 : 168.8㎡ → 152.0㎡	· 기결정된 공공공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4	공공공지	· 공공공지5 → 공공공지4 - 위치 : 다동 155-2번지 일대 - 면적 : 128.3㎡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표시 번호변경
5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위치 : 다동 139번지 일대 - 면적 : 230.1㎡	· 기결정된 도로부지 현재 보도로 이용 → 현황여건을 고려 공공공지 신설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위치 : 다동 85-4번지 일대 - 면적 : 262.8㎡	· 현황여건을 고려한 공공공지 폐지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다동45-6번지 일대	-	증) 1,946.0	1,946.0	-	-

■ 나)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다동 45-6번지 일대 - 면적 : 1,946.0㎡	· 현재 일부 공원으로 조성, 음식점 입지 → 공원 일부를 공공청사로 계획

4)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일반정비지구	· 1·2, 3, 4, 6, 7, 9, 12, 13, 14, 17, 18, 19, 20, 21, 25, 26, 27, 28, 29, 31, 34, 35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소단위정비지구	-	660~1,000㎡이하
소단위관리지구	· 태평로1가 31-19번지 일대(5-1 ~ 5-11지구) · 무교동 11번지 일대(8-1 ~ 8-4지구) · 무교동 21-1번지 일대(10-2 ~ 10-4지구) · 다동 155번지 일대(15-1 ~ 15-17지구) · 다동 60번지 일대(16-1 ~ 16-9지구) · 다동 97번지 일대(22-1 ~ 22-3지구) · 다동 127번지 일대(23-1 ~ 23-12지구) · 다동 121-3번지 일대(24-1 ~ 24-6지구) · 을지로1가 32번지일대(30지구) · 다동 141번지 일대(36-1 ~ 36-4지구) · 을지로1가 47-3번지 일대(37-1 ~ 37-3지구) · 다동 39-4번지 일대(38지구)	660㎡이하
존치지구	· 11, 32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10-1, 33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일반정비지구로 전환가능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1) 일반정비지구

구분	지구	주용도	비고
①	· 1 · 2, 3, 4, 6, 7, 9, 12, 13, 14, 17, 18, 19, 20, 25, 26, 27, 28, 29, 31, 34, 35지구	업무	완료지구
②	· 21지구	업무	시행지구

※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2) 소단위정비·소단위관리지구

■ 가) 불허용도계획

- 관련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용도 반영

■ 나) 권장용도계획

- 일반상업지역내 도입가능한 용도 중 주용도 선택적 적용가능
-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로 지정하고, 전층 권장용도 계획을 통해 계획적 개발 유도

구분	지구	주용도	지정용도(저층)	권장용도(전층)	비고
①	소단위정비지구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가로활성화용도 (1종 · 2종근린생활시설)	·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
②	소단위관리지구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단, 종교집회장 및 고시원 제외)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노유자시설 : 도심내 업무종사자를 위한 아동관련 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숙박시설 : 도심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소규모호텔 등

(3) 존치지구

구분	지구	주용도	비고
①	· 11지구	호텔	존치지구
②	· 32지구	업무	존치지구

(4)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분	지구	주용도	비고
①	· 10-1, 33지구	업무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명	위치	건폐율	비고
일반정비지구	1·2, 3, 4, 6, 7, 9, 12, 13, 14, 17, 18, 19, 20, 25, 26, 27, 28, 29, 31, 34, 35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완료지구
	21지구	다동 94번지일대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층이하 : 80% 5층초과 : 60%	-
소단위관리지구	5-1 ~ 5-11지구	태평로1가 31-19 번지 일대	80%이하	-
	8-1 ~ 8-4지구	무교동 11 번지 일대		
	10-2 ~ 10-4지구	무교동 21 -1번지 일대		
	15-1 ~ 15-17지구	다동 155 번지 일대		
	16-1 ~ 16-9지구	다동 60 번지 일대		
	22-1 ~ 22-3지구	다동 97 번지 일대		
	23-1 ~ 23-12지구	다동 127 번지 일대		
	24-1 ~ 24-6지구	다동 121- 3번지 일대		
	30지구	을지로1가3 2번지 일대		
	36-1 ~ 36-4지구	다동 141 번지 일대		
	37-1 ~ 37-3지구	을지로1가 47-3번지 일대		
38지구	다동 39-4 번지 일대			
존치지구	11, 32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1, 33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명	위치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정비지구	1·2, 3, 4, 6, 7, 9, 12, 13, 14, 17, 18, 19, 20, 25, 26, 27, 28, 29, 31, 34, 35지구	-	600	800	α	완료지구
	21지구	다동 94번지일대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600	800	α	-
소단위관리지구	5-1 ~ 5-11지구	태평로1가 31-19번지 일대	600	-	α	-
	8-1 ~ 8-4지구	무교동 11번지 일대				
	10-2 ~ 10-4지구	무교동 21-1번지 일대				
	15-1 ~ 15-17지구	다동 155번지 일대				
	16-1 ~ 16-9지구	다동 60번지 일대				
	22-1 ~ 22-3지구	다동 97번지 일대				
	23-1 ~ 23-12지구	다동 127번지 일대				
	24-1 ~ 24-6지구	다동 121-3번지 일대				
	30지구	을지로1가32번지 일대				
	36-1 ~ 36-4지구	다동 141번지 일대				
	37-1 ~ 37-3지구	을지로1가 47-3번지 일대				
38지구	다동 39-4번지 일대					
존치지구	11, 32지구	-	600	800	α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1, 33지구	-	600	800	α	-

(3)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명	위치	높이	비고
일반정비지구	1·2, 3, 4, 6, 7, 9, 12, 13, 14, 17, 18, 19, 20, 25, 26, 27, 28, 29, 31, 34, 35지구	-	90m이하	완료지구
	21지구	다동 94번지일대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0m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9-3~9-6지구	남대문로5가 542번지 일대	20m이하	-
	12-1~12-7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		
	5-1 ~ 5-11지구	태평로1가 31-19번지 일대		
	8-1 ~ 8-4지구	무교동 11번지 일대		
	10-2 ~ 10-4지구	무교동 21-1번지 일대		
	15-1 ~ 15-17지구	다동 155번지 일대		
	16-1 ~ 16-9지구	다동 60번지 일대		
	22-1 ~ 22-3지구	다동 97번지 일대		
	23-1 ~ 23-12지구	다동 127번지 일대		
	24-1 ~ 24-6지구	다동 121-3번지 일대		
	30지구	을지로1가32번지 일대		
	36-1 ~ 36-4지구	다동 141번지 일대		
	37-1 ~ 37-3지구	을지로1가 47-3번지 일대		
38지구	다동 39-4번지 일대			
존치지구	11, 32지구	-	90m이하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0-1, 33지구	-	90m이하	-

※ 단, 소단위정비지구는 간선변(20m이상)등 접도 및 구역별 여건에 따라 심의를 통해 70m이하까지 가능

7) 건축물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1) 일반정비지구(완료, 시행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지구	1,545.7	무교동 96번지 일대	업무	59.8	1,535.6	89.9	완료지구
기정	2지구	1,668.5	무교동 77번지 일대	업무	59.8	1,535.6	89.9	완료지구
변경	1·2지구	4,146.4	무교동 60번지 일대	업무	60.0이하	600/800/α	90.0이하	완료지구 (추진중)
기정	3지구	6,827.9	무교동 63-1번지일대	업무	48.9	1,063.1	124.0	완료지구
기정	4지구	3,804.5	무교동 45번지일대	업무	48.9	1,063.1	124.0	완료지구
변경	4지구	4,057.6	무교동 45번지일대	업무	60.0이하	600/800/α	90.0이하	완료지구 (추진중)
기정	6지구	1,092.7	무교동 1번지일대	업무	46.7	697.0	-	완료지구
기정	7지구	983.0	무교동 10번지일대	업무	38.9	501.0	52.0	완료지구
기정	9지구	1,534.5	무교동 95번지	업무	52.3	567.4	40.4	완료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m ²)						
기정	12지구	6,728.7	태평로1가 25번지	업무	48.2	1,338.2	90.0	완료지구
기정	13지구	2,846.8	다동 39번지	업무	42.0	787.0	106.0	완료지구
기정	14지구	2,982.0	다동 33번지	업무	37.0	696.7	102.0	완료지구
기정	17지구	2,796.5	다동 155번지	업무	59.9	999.8	100.0	완료지구
기정	18지구	1,589.1	다동 140번지	업무	39.9	478.4	56.0	완료지구
기정	19지구	2,881.2	다동 10번지	업무	39.6	642.8	71.0	완료지구
기정	20지구	2,186.4	다동 70번지	업무	44.9	661.2	65.0	완료지구
기정	21지구	1,396.8	다동 94번지일대	업무	46.4	689.3	48.0	시행지구
기정	25지구	2,114.7	다동 85번지	업무	49.38이하	760.0이하	67.7이하	완료지구
기정	26지구	1,473.8	다동 88번지	업무	46.6	694.2	60.0	완료지구
기정	27지구	1,280.8	다동 103번지	업무	47.3	662.7	65.0	완료지구
기정	28지구	1,138.6	다동 111번지	업무	45.3	660.8	60.0	완료지구
기정	29지구	2,103.6	을지로1가 16번지	업무	44.0	566.1	48.0	완료지구
기정	31지구	1,936.5	을지로1가 42번지일대	업무	45.8	512.9	47.0	완료지구
기정	34지구	5,169.9	을지로1가 87번지일대	업무	32.9	632.1	96.0	완료지구
기정	35지구	3,518.8	을지로1가 101-1번지일대	업무	55.0	1,083.0	110.0	완료지구 (시행중)

(2) 소단위관리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m ²)						
변경	5-1지구	178.2	태평로1가 31-20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2지구	548.0	태평로1가 31-23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3지구	212.9	태평로1가 31-19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4지구	305.4	무교동 28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5지구	167.1	무교동 31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6지구	105.5	무교동 33-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7지구	180.4	무교동 27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변경	5-8지구	601.3	무교동 32-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9지구	165.3	태평로1가 31-25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10지구	557.6	무교동 25-1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11지구	155.4	무교동 24-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8-1지구	231.8	무교동 9-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8-2지구	489.3	무교동 12-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8-3지구	68.8	무교동 10-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8-4지구	515.7	무교동 1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0-2지구	126.9	무교동 21-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0-3지구	136.8	무교동 21-3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0-4지구	598.3	무교동 20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지구	96.1	다동 17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2지구	82.5	다동 173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3지구	297.5	다동 17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4지구	92.6	다동 174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5지구	158.6	다동 175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6지구	420.8	다동 170-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7지구	317.4	다동 169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8지구	601.3	무교동 32-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9지구	165.3	태평로1가 31-25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10지구	557.6	무교동 25-1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5-11지구	155.4	무교동 24-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8-1지구	231.8	무교동 9-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8-2지구	489.3	무교동 12-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8-3지구	68.8	무교동 10-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8-4지구	515.7	무교동 1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0-2지구	126.9	무교동 21-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변경	10-3지구	136.8	무교동 21-3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0-4지구	598.3	무교동 20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지구	96.1	다동 17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2지구	82.5	다동 173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3지구	297.5	다동 171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4지구	92.6	다동 174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5지구	158.6	다동 175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6지구	420.8	다동 170-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7지구	317.4	다동 169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8지구	92.2	다동 176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9지구	210.9	다동 177-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0지구	89.2	다동 168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1지구	33.1	다동 167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2지구	74.2	다동 165-1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3지구	68.1	다동 166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4지구	143.5	다동 165-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5지구	145.7	다동 165-3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6지구	77.9	다동 164-1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5-17지구	112.5	다동 164-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6-1지구	1,376.5	다동 130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6-2지구	132.3	다동 60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6-3지구	360.7	다동 129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6-4지구	400.0	다동 134-1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6-5지구	214.5	다동 134-4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6-6지구	17.9	다동 134-3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6-7지구	284.3	다동 128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16-8지구	232.1	다동 137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변경	16-9지구	362.6	다동 138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2-1지구	567.8	다동 97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2-2지구	353.4	다동 98-1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2-3지구	124.4	다동 98-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1지구	60.4	다동 127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2지구	79.3	다동 126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3지구	182.9	다동 124-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4지구	152.8	다동 124-3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5지구	301.2	다동 125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6지구	95.9	다동 123-2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7지구	106.3	다동 123-1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8지구	188.1	다동 121-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9지구	103.5	다동 123-7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10지구	150.6	다동 123-6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11지구	125.6	다동 121-4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3-12지구	282.2	다동 122-1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4-1지구	158.7	다동 121-3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4-2지구	275.4	다동 120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4-3지구	426.4	다동 117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4-4지구	391.0	다동 115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4-5지구	66.7	다동 116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24-6지구	116.1	다동 114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변경	30지구	603.1	을지로1가 3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36-1지구	114.1	다동 141번지 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36-2지구	108.9	다동 142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36-3지구	107.4	다동 143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36-4지구	101.1	다동 144번지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신설	37-1지구	106.6	을지로1가 47-3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37-2지구	141.7	을지로1가 46-2번지 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37-3지구	18.2	을지로1가 71-9번지	-	80이하	600/-/α	20이하	-
신설	38지구	132.2	다동 103-8번지 일대	-	80이하	600/-/α	20이하	-

(3) 존치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1지구	1,370.0	태평로1가 29-1번지일대	호텔	94.7	1,497.9	64.0	-
기정	32지구	1,415.0	을지로1가 50번지일대	업무	79.8	892.8	45.0	-
변경	32지구	1,143.3	을지로1가 50번지일대	업무	79.8	892.8	45.0	-

(4)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0지구	2,004.0	무교동19번지	업무	55.9	533.4	38.0	존치지구
변경	10-1지구	1,171.8	무교동19번지	업무	55.9	533.4	38.0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기정	33지구	2,016.0	을지로1가 63번지일대	업무	47.2	199.5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일반정비지구 존치지구	· 청계천로, 남대문로, 을지로, 세종대로, 무교로변 : 3m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건축지정선	소단위관리지구	· 5, 8, 10, 15, 16, 22, 23, 24, 30, 36, 37, 38지구 - 대지경계선을 건축지정선으로 지정	-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일반정비지구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소단위정비지구	· 조성위치 - 보행결절점 및 간선가로변	

(3)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가) 규제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사선절제형 또는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옥탑층 노출금지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 외부노출 금지	-
건축물 방향성	구역전체	·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도록 배치하여 가능한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배치	-
저층부 외관	구역전체	· 보행친화적인 저층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료, 색채를 이용한 시각분절(3층이하 저층부 분리) · 저층부 개방형 입면 조성	-
진입구 처리	구역전체	· 건축물 주 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 하지 않도록 함	-
재료 및 색채	구역전체	·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금속, 타일, 반사유리)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 나) 권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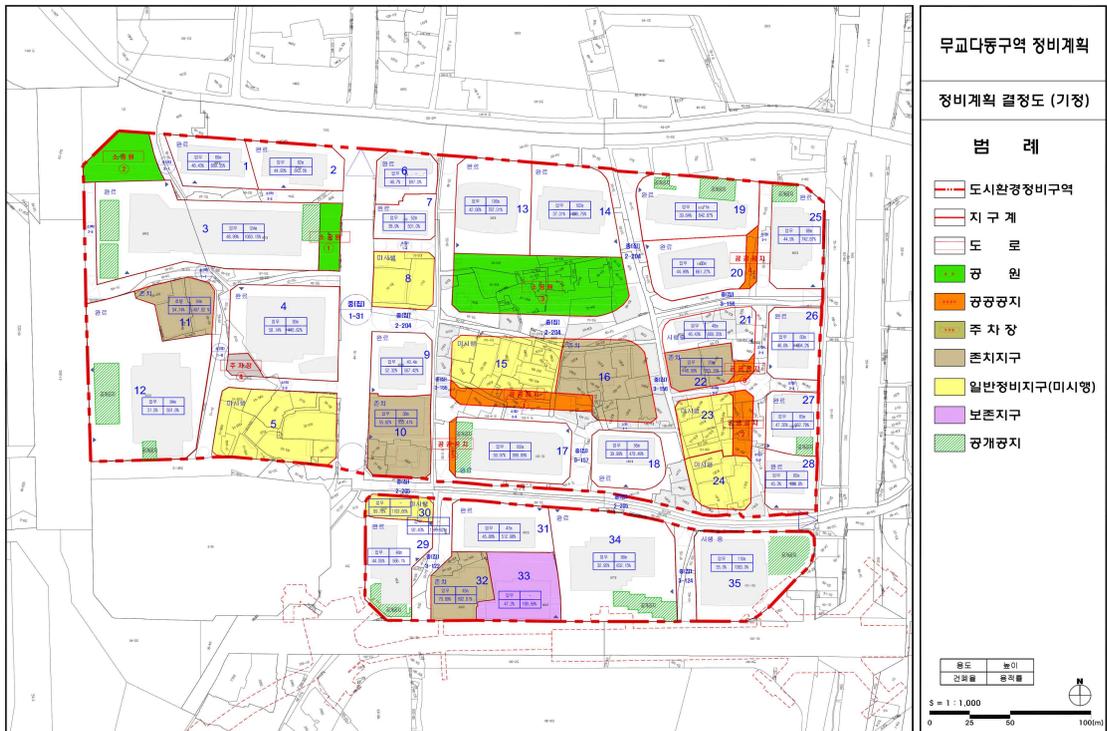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 권장 ·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사용 권장 · 저층부의 경우 재질감이 느껴지는 소재사용 권장	-

9)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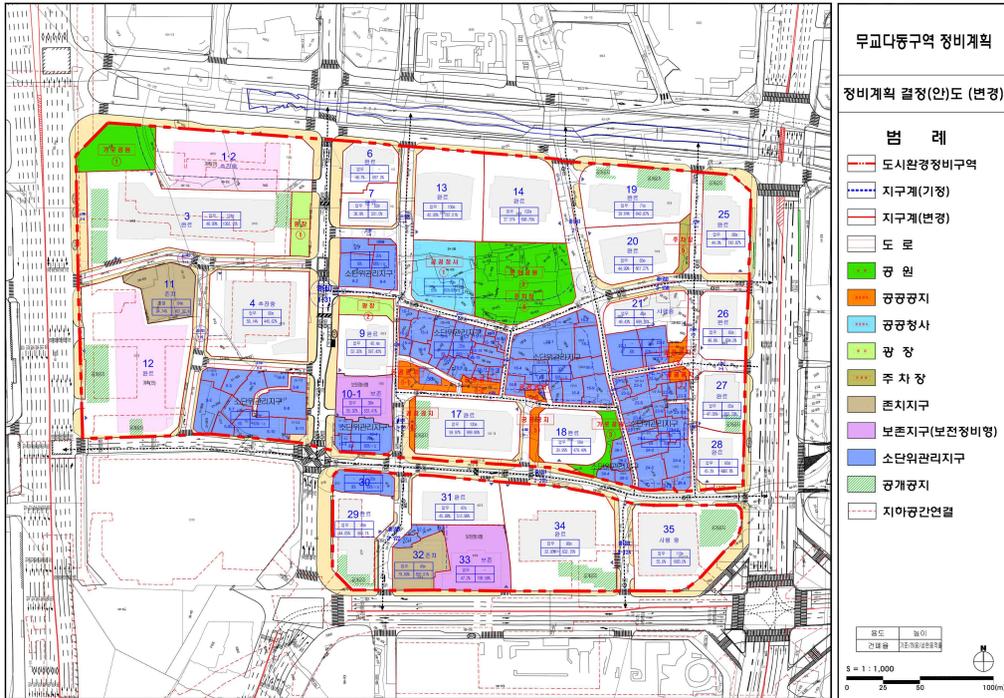
- 무교다동구역 평균 부담률 유지
 - 무교구역 : 12.6%, 다동구역 : 30.2%, 을지로1가구역 : 3.0%
- 기반시설 계획조정으로 축소된 부담량은 건축 시설물로 기부채납
 - ※ 일반정비·소단위정비·존차·보존지구(보전정비형)는 정비사업시행 시 정비기반시설 부담 의무
 - ※ 소단위관리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획지별 필요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

10)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안)도 (기정) >



< 정비계획결정(안)도 (변경) >



※ 동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결청구,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안하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다. 기타

1. 공람기간 : 2017. 10. 25~ 2017. 11. 24 (30일)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6층(☎02-3396-5782)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16개의 조례 구성을 5장 23개의 조례로 구성 변경
-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변경 (도시경관 → 도시디자인) 용어 재정의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신설
- 제2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 도시디자인이 지켜야할 원칙 신설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준용 신설
- 제3장 도시디자인사업 등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 시행 근거 마련
 -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절차, 주민참여 지원방법 등 신설
- 제4장 도시디자인 심의

-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심의신청시기, 심의절차 규정 신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
- 제5장 도시디자인 위원회
- 위원회 7명이상 20명 이하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사무처리 간사 조정 (도시경관 담당주사 → 담당주사)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도시디자인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5962, FAX : 3396-8821, myhaj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3396-59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란 구 전체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이란 도시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디자인사업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제안서의 승인을 얻어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6. "도시디자인심의회"란 디자인과 관련한 정책·조례 등과 시설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공간 등의 보전·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 도시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은 주변환경 등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우수한 도시공간 등의 보전·개선과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물 등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6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도시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 계획 및 도시디자인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디자인사업 등

제8조(도시디자인사업)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민은 구청장에게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 ⑤ 도시디자인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도시디자인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구민단체·전문가·구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장 도시디자인 심의

제11조(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 제1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디자인 심의절차)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도시디자인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디자인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단, 야간경관 시설은 제외)
5. 별표의 시설물(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위원회 심의)
6. 제4호 및 제5호의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은 제외
7.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

- ②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도시관리국장과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위원회 및 서면 심의에 참여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1.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마. 가로등 바. 트런치, 맨홀 사. 제설시설 아. 가로수 보호덮개 자. 가로 녹지대 차. 가로 화분대 카. 분수대 타. 벽천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 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기타 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 2017-737호

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17. 10. 25.

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1일간

나. 공람장소 : 중구청 주택과(☎ 3396-5725)

다. 공람공고 : 구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 고시·공고)

라. 공람의견 제출장소: 중구 주택과(☎ 3396-5725)

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지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	증)126,747	126,747	

2. 정비계획(안) : 붙임참조

바.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사.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 주택과(☎ 3396-5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거환경관리구역 결정도

붙임 2. 주거환경관리사업 종합계획(안)



※ 상기 계획(안)은 향후 행정절차 진행과정 및 실시계획단계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